



『강릉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학 상호협력 협약서

강릉시와 강원도립대학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강원도관광재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원, 강릉문화재단,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 (사)강릉관광진흥협회,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는 강릉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강릉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강릉시와 협약 참여자 간의 정보교류, 행정지원, 업무협약, 공동사업 등 상호 교류의 활성화와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협약 내용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의 목표인 「강릉 국제관광도시 조성」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3조(법적 구속력 배제)

본 협약서로 서명된 내용은 상호협력 증진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협약 내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4조(협력분야)

협약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강릉시 관광 시책 사업 지원
2. 강릉시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의견 교환
3. 세계 100대 관광명소 및 세계 100대 관광도시 달성을 위한 협력
4.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논의
5. 기타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안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해 진행되는 각종 사업, 개발 관련 정보에 대해 협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대외홍보와 기타 공개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협약효력과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협약에 의한 종료가 없는 한 유효하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의 내용 중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약하에 정한다.

이상의 협약을 체결하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14부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기명날인 후 협약 당사자는 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23년 6월 13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u>신광재</u>	강릉시 시장 <u>개종우</u>	한국관광공사 사장 <u>김장실</u>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u>오창희</u>	강원도관광재단 대표이사 <u>강복녀</u>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u>강희문</u>
강릉문화원 원장 <u>최호남</u>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u>최신복</u>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 지부장 <u>이선종</u>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 지부장 <u>박주국</u>	(사)강릉관광진흥협회 회장 <u>최정운</u>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u>반선섭</u>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 <u>김용승</u>	강릉영동대학교 총장 <u>최민숙</u>	